

보건복지부 시정요구

제 목 해산급여 지원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산청군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하여 해산급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급여액은 1인당 60만 원(2013년은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산청군에서는 해산급여를 기 지원받은 ○○○에게 해산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에게 초과 지급된 해산급여 600,000원을 회수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